



보도자료

보도일시	2010. 10. 15(금) 배포시		
배포일시	2010. 10. 15(금) 15:00	담당부서	국고국 계약제도과
담당과장	계약제도과장 박성동 (2150-5210)	담당자	권오영 사무관 (2150-5221)

제목: 2010년도 국가계약제도 운영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

- ◆ 기획재정부는 10월 15일(금) 제2차 국가계약제도심의위원회 (위원장: 기획재정부 제2차관)를 개최하여
 - 2010년도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, 향후 계획을 심의하였음
 - ◆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계약제도의 공정성·투명성을 제고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 등 정부정책 지원을 위하여
 - 전자조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,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하고 공기연장비용의 산정방안을 구체화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임
- 국가계약제도는 재정지출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경제 활성화 등 주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될 수 있으며
- 국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계약사무에도 준용되는 등 재정 운용의 핵심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

□ 국가계약은 재정집행규모와 제도 등의 확산효과 측면에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

* 정부계약(국가, 지자체, 공기업 포함) 규모는 '09년도 기준으로 122조원 (GDP의 약 11.5%) 수준

(단위 : 조원)

	'05년	'06년	'07년	'08년	'09년
· GDP 규모(A)	865.2	908.7	975.0	1,026.5	1,063.1
· 정부계약규모(B)	83.2	83.8	92.0	100.9	122.2
국가 및 지자체	53.5	51.3	52.1	61.1	71.2
공공기관 등	29.7	32.5	39.9	39.8	51.0
비중(B/A, %)	9.6	9.2	9.4	9.8	11.5

* 자료 : 중기청 「공공기관 구매실적(물품, 용역, 공사 포함)」

□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제도의 공정성·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상생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,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음

① 예산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집행

-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자격요건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,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강화('10.4.15, 회계예규 개정)
-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계약은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계약으로 체결하도록 명확화('10.8.11, 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)

② 계약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

- 계약이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감안,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('10.8.11, 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)

- 원·하수급자간 하도급대금 지급·수령내역을 발주기관이 확인토록 하는 「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」 도입 ('10.9.8, 회계예규 개정)

③ 대중소기업 상생 등 정부정책 지원

-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설업체에 대해서도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('10.4.15, 회계예규 개정)
- 조달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표준제품을 최소 20억원 이상 구매할 경우, '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'에 한해 입찰참가 허용(조달사업법('10.5.17) 및 동법 시행령('10.8.17) 개정)
- 지역업체의 공공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최저가공사 PQ시 '지역업체 참여도'를 배점항목으로 도입('10.9.8, 회계예규 개정)
 - * PQ(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):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전에 공사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통과한 자에 한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

④ 입·낙찰제도 개선을 통한 계약운영의 효율성 제고

- 공공기관의 해외수주 원활화를 위하여 해외발주처 요구 이행 등 부득이한 경우, 공공기관의 장이 계약방법·절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('10.5.31, 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)
- 턴키공사에서 설계보상비 지급시 설계점수가 높을수록 설계보상비가 증가하도록 지급방식 개선 ('10.9.8, 회계예규 개정)
 - * 설계비 보상: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우수설계자에 대하여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입찰참여의 부담을 완화

□ 향후 추진할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음

① 전자조달의 법적 기반 강화

-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근거 및 전자조달의 절차·방법 등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의 구축근거를 명확화
- 시스템이용수수료 부과, 전자조달업무 방해시 처벌 등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효과적인 관리·운영 체계 구축
-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조달의 지원 및 활성화를 도모

② 정부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강화

- 생산시설 점검, 납품검사 등 품질관리업무의 위탁확대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·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품질관리업무의 공정성·객관성 확보
 - 수탁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점검근거를 마련하고 부정확한 방법으로 업무수행시 형사처벌 등 제재

③ 예산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집행

- 원가계산용역을 수주하고자 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에 사전등록 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리·감독함으로써 용역기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부실원가계산을 방지
 - 단, 민간전문기관에 등록업무 등을 위탁함으로써 민간기관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여 스스로 관리·감독토록 하는 방안 추진

- 공사원가 산정시 간접공사비, 일반관리비 등에 적용되는 비율을 현실화하여 명확한 예정가격 작성 기준 마련
-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방식의 구체화를 통해 합리적인 계약금액조정 기준 마련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
 - 계약상대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(손실)을 원칙으로 하여 지급 하되, 실비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 허용

④ 정부정책 지원 및 계약운영의 효율성 제고

- 고용확대 및 녹색성장 참여 기업에 대하여 계약단계별로 입찰 인센티브 부여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
 - PQ·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계약보증금을 감면 또는 계약의 해지·해제를 유예하는 방안 등을 검토
-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역중소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 확대
- 턴키공사의 설계적합최저가방식 개선으로 효율적인 가격경쟁 활성화 방안 마련
 - * 설계적합최저가: 기본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을 선정하고 그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(실시설계 심사후 낙찰자로 결정)
- 최저가낙찰제공사의 저가심의(입찰금액 적정성 심사)를 내실화 하고 심사과정의 공정성·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
 - 심사서류를 간소화하고 입찰참가자들의 입찰서류 위·변조행위 방지하며, 계량화된 심사지표 마련

⑤ 국가계약제도 관리체계 정비 및 교육활성화

- 국가계약 통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개선
 -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 및 발주기관별 정보처리장치의 연계를 통해 국가계약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
-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한 국가계약 이행에 필요한 업무전문성 제고 및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 활성화
 - 조달교육원, 대한건설협회, 원가관리기관 등 계약관련 전문교육 기관을 활용

□ 기획재정부는 제2차 국가계약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추진계획에 따라 과제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

- 민간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 협의 등 세부과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
- 회계예규,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

<첨부> 2010년도 국가계약제도 운영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

기획재정부 대변인

2010년도 국가계약제도 운영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

2010. 10. 15

국가계약제도심의위원회

■ ■ 목 차 ■ ■

1. 국가계약제도 운영현황	1
2. 국가계약제도 운영실적	2
3.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계획	10
4. 향후 추진일정	18

1. 국가계약제도 운영현황

□ 국가계약제도는 재정지출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국가경제 활성화 등 주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

○ 국가계약은 재정집행규모 및 제도 등의 확산효과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

□ 국가, 지자체, 공기업의 계약 규모는 '09년도 기준으로 122조원(GDP의 약11.5%) 수준

(단위 : 조원)

	'05년	'06년	'07년	'08년	'09년
· GDP 규모(A)	865.2	908.7	975.0	1,026.5	1,063.1
· 정부계약규모(B)	83.2	83.8	92.0	100.9	122.2
국가 및 지자체	53.5	51.3	52.1	61.1	71.2
공공기관 등	29.7	32.5	39.9	39.8	51.0
비중(B/A, %)	9.6	9.2	9.4	9.8	11.5

* 자료 : 중기청 「공공기관 구매실적(물품, 용역, 공사 포함)」

□ 특히 건설시장의 경우 공공부문의 규모가 '09년 58.5조원으로 국내건설시장 118.7조원의 49% 수준

○ 건설산업은 건설투자액, 취업자 수 등을 고려할 때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

* GDP 대비 건설투자액('09년) : 18.4%

* 건설업 취업자수('09.12월) 172만명(전체 취업자의 7.3%)

2. 2010년도 국가계약제도 운영실적

1 예산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집행

가.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한 전문성 및 자격요건 강화,
규정위반에 따른 제재 강화('10.4.15, 회계예규 개정)

□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전문성 강화

- 현행 3년 이상 경력자 4인 외에, 5년 이상 경력자 2인을
추가 고용하도록 함

*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준비를 위해 6개월간 유예기간 부여

* (원가계산)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, 계약목적물의 내용·특성
상 발주기관 스스로 하기 곤란한 경우 용역기관에 의뢰

□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한 자격요건 심사 강화

-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 의뢰시,
민간전문기관에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
의뢰하도록 하여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

* (민간전문기관) 한국원가관리협회, 한국원가공학회 2개 단체가 있음

□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

- 허위서류로 자격요건을 갖추는 등 규정을 위반한 용역기관에
대해 해당 용역기관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중단하도록
그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

* (감독기관) 용역기관은 주로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이나 대학 연
구소로서 해당 주무관청과 학교에서 감독

나. 계속비계약 근거 및 계약기간 연장방지 노력규정 마련
(‘10.8.11, 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)

-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**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을 활용토록 명문화**
-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 **발주기관의 계약기간 준수 노력의무를 명시**

다. 조달청 대지급제도 운영 개선(‘10.3.30, 조달사업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)

□ 조달청 대지급대금 재원 확보방안 마련

- 국가약법시행령의 대가지급 기한(5일)에 맞춰 수요물자 **대지급 대금의 납입기한을 7일 → 5일로 단축**
- 조달청이 대지급한후 수요기관에 납입고지하던 것을 **수요기관의 납품검사 완료사실 확인후 납입고지토록 개선**

□ 조달대금 등의 납부 지연일수에 따라 연체료 차등부과

- 조달대금 및 수수료 납부금액의 1000분의 10의 범위내로 **연체료의 상한을 설정**하고, 납부지연일수에 따라 **연체료를 0.1~1%로 차등화**하여 납부관리의 효율성 제고

* 연체일수가 10일 이내 → 1/1000, 10일~30일 → 5/1000, 30일 초과 → 10/1000으로 차등부과

라. 민관공동비축사업 도입에 따른 세부시행기준 마련
(‘10.3.30, 조달사업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)

- 민관공동비축사업 도입(조달사업법 ‘10.3.30시행)에 따라 참여 대상, 지원 및 제재방안 등의 세부시행기준 마련
 - 참여대상을 원자재 생산·공급·수요업체, 공공기관, 금융기관으로 정하고, 조달청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
 - 원자재 파동시 비축물자를 조달청에 우선매각하고, 위반시 감면사용료 등 환수 및 부정당업자제재 등 조치

* 민관공동비축제도 : 조달청의 원자재비축만으로는 충분한 원자재 확보가 곤란하여, 민간의 비축사업 참여를 통해 국내비축재고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

2 계약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

가.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(‘10.8.11, 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)

- 계약이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감안, 부정당업자에 대해 **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**할 수 있는 근거 마련
 - 국가계약의 공정한 체결 및 이행을 저해하는 부정당업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되,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

나.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제도 도입(‘10.9.8, 회계예규 개정)

- 건설·전기·정보통신공사 등에서 원수급자의 하도급대금지급내역 및 하수급자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이 대조·확인토록 함

* 하도급대금 부당 지급이 확인될 경우 「하도급 법령」에 따라 원수급자는 제재 처분을 받게 되고,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

다.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국가계약법령 적용(‘10.4.28,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정)

- 전년도 자산규모가 1,000억원 이상이고, 당해연도 예산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‘10.7.1 계약체결분부터 국가계약법령 적용

* 기관 업무특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승인을 받아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·절차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함

라. 입찰대리인 요건 강화(‘10.1.4, 회계예규 개정)

-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입찰과정의 공정성·투명성 제고

마. 용역 발주시 기술협약 체결 명문화(‘10.4.15, 회계예규 개정)

- 특정기술이 포함된 용역을 발주할 경우 해당 기술보유업체와 ‘기술사용협약’을 체결하도록 명확화

* 공사 및 물품제조·구매계약은 기술사용협약 체결을 이미 시행중

* (기술사용협약) 발주기관이 입찰 전 기술보유업체와 직접 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가 공정한 조건하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.

가. PQ시 지역업체 참여도 반영('10.9.8, 회계예규 개정)

- 지역업체의 공공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PQ시 '시공경험' 항목을 45점에서 40점으로 축소하고, '지역업체 참여도' 항목을 5점 배점

* 적격심사대상공사,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, 턴키공사, 기술제안입찰공사,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 발주 공사 등은 적용 제외

나.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제도 도입

(조달사업법('10.5.17) 및 동법 시행령('10.8.17) 개정)

- 조달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표준제품을 최소 20억원 이상 구매할 경우,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에 한해 입찰참가 허용

* 레미콘, 아스콘의 경우 구매물량 등을 고려하여 50억원 이상 구매시 적용

- 중소기업 공동수급체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1인 이상 포함하고,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지분율은 20% 이상이어야 함

*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: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제한·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구매하는 제품으로 196개 제품이 지정되어 있음

다.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시 조달청 위탁 구매 의무화('10.3.30, 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)

- 공기업·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2억원 이상 구매시, 구매제품의 특수성·전문성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을 통해 의무적으로 위탁구매

- G2B를 통한 입찰참여기회 확대 및 적정낙찰을 보장, 납품대금 조기지급 등에 기여

라. **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선금지급절차 간소화**
(‘10.1.4, 회계예규 개정)

-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, 발주기관이 선금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선금지급 기간을 최대 20일까지 단축

마. **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확대**(‘10.4.15, 회계예규 개정)

-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설 업체에 대해서도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

* 사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인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있음

4 입찰제도 개선을 통한 계약운영의 효율성 제고

가. **턴키공사제도 개선**(‘10.9.8, 회계예규 개정)

□ **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개선**

- 우수설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설계점수가 높을 수록 설계보상비가 증가하도록 지급방식 개선

- 설계점수 60점이상에 대해 고정설계비용(0.3%, 공사비대비)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설계점수에 연동하여 지급

【설계보상비 지급산식】

$$\diamond \text{설계보상비} = 0.3\% + \frac{\text{설계점수} - 60}{40} \times 0.6\%$$

※ 설계보상비 총액이 공사에산의 2% 초과시 지급대상자별 산정금액에 따라 비율 배분

* (종전) 설계점수 순위에 따른 일률 지급(1위:0.7%, 2위:0.5%, 3위:0.4%)

□ **턴키·대안공사 등의 가중치기준방식 관리 강화**

- 턱키·대안공사의 낙찰자를 가중치기준방식으로 선정할 경우, 기술난이도에 따라 공사유형을 구분하고 설계가중치의 상·하한을 규정하여 과도한 설계가중치 적용 방지

< 설계가중치 적용기준 신설 >

등급	공사규모	설계가중치 범위
A(기술강조형)	500억이상	50%초과 70%이하
	500억미만	50%초과 60%이하
B(균등평가형)	모든 공사	45%이상 55%이하
C(가격강조형)	모든 공사	30%이상 50%미만

- * 발주목적 및 공사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 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허용

나. **신속한 재해복구공사 지원**(‘10.8.11, 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)

□ **재해복구공사에 대한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체결 허용**

- 회계연도 개시전 또는 예산배정전이라도 확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재해복구계약을 체결 허용

- * 현행 회계연도 개시전 체결가능한 계약대상 : 임차·운송·보관 기타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

□ **재해복구공사에 대한 개산계약 허용**

- 재해복구공사의 신속한 경쟁입찰 실시 등을 위하여 재해 복구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

- * 현행 개산계약 대상 :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, 시험·조사·연구용역 계약, 공공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

다. 공공기관의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개선

(‘10.5.31, 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)

- 해외 발주처 요구의 이행, 해외 사업정보의 비밀유지 및 완료기간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계약방법 및 절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

라. 국가계약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

(‘10.9.8, 회계예규 개정)

- 국가계약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(‘10.7.21)에 따라 국가 계약법령 하위규정인 회계예규에 세부사항 반영
 - 물량내역수정 및 순수내역입찰제 도입, PQ실시여부 및 심사기준 자율화,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등

마. 조달청 의무조달 대상범위 명확화

(‘10.3.30,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)

-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조달청을 통해 계약해야 하는 의무조달 요청 대상범위를 국가기관의 경우 1억이상 수요물자 구매계약, 30억이상 공사계약으로 명시
- * 하부규정에 위임 또는 여러 조문에 규정되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의무조달대상 규정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·정비

3.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계획

1 예산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집행

가. 원가계산용역기관 등록제 도입 등 관리·감독 강화

원가계산용역을 수주하고자 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에 사전 등록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리·감독

* (등록제) 용역대상기관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하고, 자격요건은 종전대로 발주기관에서 용역의뢰시마다 심사

○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공신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용이

원가계산용역기관 등록제 도입에 따른 등록 및 실태조사 업무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

○ 행정 효율을 위하여 현재 발주기관으로부터 원가계산용역 기관에 대한 요건심사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는 민간전문 기관에 위탁

* (민간전문기관)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법에 따라 설립 허가한 법인(한국원가관리협회·한국원가공학회)

* (위탁에 따른 등록절차) 용역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 원가관리협회, 한국원가공학회 중 택일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기관의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등록증을 발급

○ 민간기관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여 스스로 관리·감독 하도록 함

(조치사항) 회계예규(예정가격작성기준) 개정

나. 예정가격 제비율 현실화

□ 공사원가 산정시 간접공사비, 일반관리비 등에 적용되는 제비율을 현실화하여 정확한 예정가격 작성 지원

○ 그간의 공사규모 확대 등을 감안하여 구분기준* 및 제비율(간접노무비율, 일반관리비율)을 조정하는 방안 검토

* 공사규모(3단계) : 5억원미만, 5억원~30억원 미만, 30억원 이상
공사기간(3단계) : 6개월 미만, 6~12개월 미만, 12개월 이상

현 행	개선방향
· 공사규모 및 공사기간 등 예정 가격작성 관련 구분기준이 '89년 설정 이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음	· 그간의 공사규모 확대 등을 감안, 구분기준 및 제비율 조정

□ (조치사항) 회계예규(예정가격작성기준) 개정

다.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원가계산용역기관 의뢰

□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시, 조정요건 충족여부 및 조정금액의 적정성 검토를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명시

○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상대방의 과도한 증액청구를 방지하고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 제고

□ (조치사항) 회계예규(정부입찰·계약집행기준) 개정

라.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식 개선

□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시 간접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간접비 산정기준 구체화 및 명확화

○ 계약상대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(손실)을 원칙으로 하여 지급하되, 실비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 허용

- 관련 증빙서류를 통한 계약상대자의 입증 전제

< 간접비 산정기준(안) >

구 분	산정기준
간 접 노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투입된 인력의 임금대장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기준으로 실제 지급된 비용으로 산정 *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식 배제 · 공기연장 동안 투입되는 간접노무 인력의 규모를 계약상대자와 협의
경 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기연장에 따라 보상대상이 되는 항목을 명시 * 현장사무실, 숙소, 가설시설물 등 현장의 유지·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 · ‘직접계상’ 또는 ‘직접+비율계상’ 방식에 의해 산정 * (제1안: 직접계상) 모든 경비에 대해 세금계산서, 영수증 등 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산출 * (제2안: 직접+비율계상) 금액이 적고 증빙서류의 구비 및 확인이 불편한 기타경비는 비율계상으로 산출
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원수급인의 공기연장비용 청구시 하수급인의 비용도 함께 청구하도록 명시

□ (조치사항) 회계예규(정부입찰·계약집행기준) 개정

2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목표 달성 및 계약운영의 효율성 제고

◇ 국가계약의 공정성·투명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중소기업 지원 및 턴키제도 개선 등 효율적인 계약제도 운영방안 마련

가.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

- 고용확대기업에 대한 계약제도상 인센티브 부여
 - 계약단계별로 신규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방안 검토
- (조치사항) 시행령, 회계예규(적격심사기준 등) 개정

<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 방안(예) >

계약 단계	인센티브 세부내용
낙찰자결정단계	· PQ·적격심사시 신인도 평가 가점부여
계약이행단계	· 계약보증금 감면 · 선금지급 확대
계약해지단계	· 계약의 해제·해지 유예

나.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

- 국가계약제도 운영을 통한 녹색성장 지원 추진
 - 녹색성장 참여기업에 대한 계약제도상 인센티브 부여 검토
- (조치사항) 시행령, 회계예규(적격심사기준 등) 개정

【참고 : 조달청 녹색구매 활성화 계획('10.1월)】

- ① 공공기관의 수요가 많은 품목에 대해 최소 녹색기준 제정 추진
- ② 에너지 저효율제품 공공입찰참가제한
- ③ 녹색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(수의계약 가능)
- ④ 적격심사시 녹색기술·제품에 가점 부여

다. 지역·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

□ 혁신도시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확대

- 4대강사업과 같이 혁신도시건설에 따른 공공기관이전 청사 신축공사에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예외 적용
 - 청사 이전공사는 '12년 완공계획으로 '11년 상반기까지 모든 기관 착공예정
 - 이전공공기관 102개기관 신축청사 건축비 약 7조 2천억원 예상

□ (조치사항) 시행령 및 고시 개정

라. 턴키공사제도 개선

□ 발주기관이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의 설계기준점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- 턴키에서 최저가로 낙찰자 결정시 부실설계에 대한 우려로 설계적합최저가방식 적용사례가 적음에 따라, 설계점수의 하한선을 둔 최저가방식 마련

□ (조치사항) 시행령, 회계예규 개정

마. 최저가낙찰제의 저가심의회 개선

□ 물량내역수정제 및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에 따른 합리적 물량심사방안 마련

- 발주기관은 물량내역수정제 및 순수내역입찰제 실시사유 및 심사기준 등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마련
 - 입찰참가자의 견적능력 및 발주기관의 심사능력 등을 고려, 단계적 운용

- 난이도가 높거나 신규공종이 포함되어 물량의 누락·오류 가능성이 높은 공사 등에 대해 적용
- 저가심의제도의 공정성 제고 및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내실화 방안 마련
 - 심사서류 간소화를 통해 발주기관 심사부담을 절감하는 등 저가심의과정의 효율성 제고
 - 입찰참가자들의 입찰서류 위·변조행위 방지방안 마련
 - 계량지표 마련 등을 검토하여 심사과정의 객관성 강화
- 절감사유서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
 - 절감사유서에 관한 내용을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하는 등 발주기관 및 감리업체의 인식제고 방안 마련

현 행	개선방향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입찰참가자들의 입찰서류 위·변조행위 만연 · 절감사유서 분량이 과다하여 발주기관은 형식적으로 심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입찰서류의 검증가능성 강화 · 심사부담 절감 등을 통해 심사 내실화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발주기관, 심사위원회에 의한 자의적 심사 우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객관적 심사기준 마련 검토 · 심의결과 공개범위 확대 등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설계변경시 절감사유서를 반영하지 않아 과다증액 사례 발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절감사유서 관련 내용을 회계예규에 명시하는 등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

- (조치사항) 회계예규(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기준) 개정

3**국가계약제도 관리체계 정비 및 국가계약제도 교육활성화 추진****가. 국가계약 통계관리 체계 정비****□ 국가계약규모, 종류별 실적 등을 관리하기 위한 통계관리 시스템 구축**

-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선하여 국가계약 관련정보 체계적 관리
- 발주기관별 정보처리장치 연계 추진

* 조달청, 대한건설협회,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 DB와 연계 통합

현 행	개선방향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조달청 위탁계약실적만 조달청에서 집계 · 중소기업청에서 각 기관별 총구매 실적을 제출받아 집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조달청에서 국가기관 전체 계약 실적 집계 · 총계약금액뿐만 아니라 예정가격, 입찰방법 등 계약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

나.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한 국가계약제도 교육활성화 추진**□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한 계약방법, 절차, 원가계산 등 국가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전문성 제고 및 자질향상을 위해 계약교육 실시**

- 조달교육원, 대한건설협회, 원가관리기관 등 계약관련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하여 계약제도 및 원가계산 등 위탁교육 실시

※ 법적근거 : 국가계약법 제32조(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)

국가계약법 제32조 (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) 정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4**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효율적 관리·운영체계 구축**

-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의 구축·근거 마련
 - 조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·운영 근거 및 절차 등 마련
- 전자조달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전자조달 활성화
 - 공공기관장에게 조달사업자 입찰참가자격정보의 변경사항 통보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로서의 의무 명시
 -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민간개방 근거 마련, 국제협력 및 해외수출지원 등 전자조달지원 및 활성화 도모

5**조달물자 품질관리업무에 대한 관리·감독 강화**

- 조달물자 품질관리업무의 근거 마련 및 위탁관련 규정 구체화
 - 현행 시행령의 조달물자 품질관련 규정을 법률에 근거 마련
 - 품질관리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·감독, 관련 비용의 징수 근거·절차 마련
- 품질관리업무 수탁기관에 대한 제재
 - 수탁기관 담당자의 뇌물수수시 공무원으로 의제

4. 향후 추진일정

- 제3차 회계예규 개정(10월중)
- 국가계약제도심의위원회(11월초)
- 국가계약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(11월중)
- 제4차 회계예규 개정(12월중)